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2026. 6.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	2
III. 향후 제도개선 방향 .....	3
IV. 세부 개선방안 .....	4
1.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	4
2. 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	7
3. 미래지향적 샌드박스 제도 유연화 .....	10
V. 향후 추진계획 .....	13

## I. 추진 배경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19. 4~)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시행 7년간 1,000건 이상의 혁신사례를 발굴,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
  - \* '26. 4월말 기준 1,059건 지정, 436건 출시(소부처 샌드박스 중 가장 높은 실적)
  - 지정사례 중 85%가 제도개선 완료(15%) 또는 진행 중(70%)으로 일회성 혁신을 넘어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

###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 ▶ (개요) 금융분야 혁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①혁신금융서비스, ②지정대리인, ③위탁테스트, ④규제신속확인이 있음
-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
- \* (지정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 4년 (추가연장)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시 6개월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 최대 5.5년

-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초기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정
  - 특히, 혁신 서비스 종료 후 제도권 금융 진입을 추진하는 사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권 전환 과정을 정비할 필요
  - \* 혁신사업자의 규제개선 신청 증가 추세('22년:4건 → '25년:23건) 및 '24년 이후 혁신서비스 신청 건수 증가를 감안할 때 제도권 전환과정 관리 필요성이 대두
-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전(全)주기에 걸쳐 혁신친화적으로 개편하여,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발굴·성장을 한층 가속화·고도화하고자 함

## II.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 1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의욕을 고취하지 못하는 제도환경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주기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샌드박스 제도로 인해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초기 스케일업 지원에 한계

√ **(현장 건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등 능력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의 혁신 서비스 진출이 어려움(26. 3. 핀테크산업협회)

- ⇒ 샌드박스 내 핀테크 기업 비중 감소, 금융사 쏠림 현상 심화 등 혁신 서비스의 다양성 및 추진동력 약화 추세

\* 연도별 금융 샌드박스 기업 중 핀테크 비중 급락: ('19년) 56% → ('25년) 7%  
'25년 말 누적 샌드박스 승인 건 중 회사별 비중: (금융사) 76%, (핀테크) 14%

### 2 혁신 서비스 종료 후 제도권 정착률을 위한 출구전략 부재

- 실증 성공사례의 제도권 금융 정착을 연계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샌드박스 종료-제도권 전환 단계에서 사업자가 불확실성에 직면

√ **(현장 건의)**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전환단계에서도 지속적 사업 영위 여부가 불확실하고, 관련 규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26. 3. 핀테크 기업)

- ⇒ 혁신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저해되고, 제도권 전환 실패시 질서있는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낼 사후관리 수단 부족

### 3 혁신친화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

- 금융규제 특례 범위 제한, 안전별 경중과 무관한 일률적인 지정 절차\* 등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결정에 제약

\* 현재 모든 안전이 혁신위 심사-금융위 의결의 2단계를 거침(평균 78일 소요)

√ **(전문가 의견)** 既지정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관련 내용, 형식적 요건 미흡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시간이 소모되어 핵심적 서비스 논의 여력 부족(26. 2. TF)

- ⇒ AI 발전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포용적 금융과 같은 새로운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에 한계

### III. 향후 제도개선 방향

####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 >

분야	현황(As-is)	개선과제(To-be)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의욕 고취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망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적용 활성화</li> <li>② 혁신 서비스 심사·운영을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li> <li>③ 핀테크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지원</li> </ul>
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권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샌드박스 종료 이후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li> <li>② 실증성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li> <li>③ 혁신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li> </ul>
미래지향적 샌드박스 제도 유연화	혁신친화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경직적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특례 법령 확대</li> <li>② 안전 중요성을 고려한 심사 체계 효율화</li> <li>③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li> </ul>

####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전(초)주기에 대한 총체적 개선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장선도적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성장·제도화시키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개편

## IV. 세부 개선방안

### 1.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 ① 유망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확대

□ (현황)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 부재

-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도 경쟁압력에 노출

\* 지정된 혁신 서비스 중 94.8%가 동일·유사 건에 해당하는 등 실무상 복수지정이 일반화

##### ❖ [참고] 배타적 운영권 제도 개요

- ▶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제도화 이후 정식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가짐(혁신법 §23)

☞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만 인정되어 서비스 초기 사업·경영안정에 영향 ↓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테스트 비용, 책임보험료 등) 지원 부족\*

\* 비용 지원제도는 있으나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부담이 있고, 연간 지원한도도 높지 않음(예: 테스트비용 최대 1.2억 원, 책임보험료 최대 50%)

□ (개선) 유망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등 초기 지원 확대

- 서비스 특성상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 확보 지원

- 서비스 특성, 모방가능성·시장형성 필요 등을 고려하는 배타적 운영권 인정대상·기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절차를 간소화(별도심사 면제)하고, 지원금 상한도 확대\*

\* 지원한도 상향 예시: 테스트비용 1.2억 원 → 2억 원, 책임보험료 50% → 100%

⇒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서비스 초기 scale-up을 중점 지원

## ② 혁신 서비스 심사·운영을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

### □ (현황) 경직적 심사 및 제도운영에 따라 핀테크의 성장기회 제약

- 재무여건이 취약한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정량적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혁신 서비스 진출에 제약
- 샌드박스 단계임에도 예방적이고 과도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어, 부가조건의 이행가능성 및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축소

√ (사례) ◎◎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시, 신생 스타트업 및 제도권 금융사 구분 없이 특정 개수의 제휴사 확보 조건을 부과  
→ 스타트업일수록 제휴사 확보가 어려워 혁신서비스 출시 포기 및 지정 철회

### □ (개선) 혁신 서비스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를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

- 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건(재무건전성 등) 심사를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등 정성적 요인이 함께 반영되도록 개선

#### < 혁신 사업자 지정시 사업자 능력 요건 심사방향 >

현 행	개 선
<p>■ 정량적 요건 중심 판단</p>	<p>■ (정량) 기본적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소비자 보호 및 기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준</p> <p>■ (정성) 성장가능성, 보완가능성 등 고려 * (예) ① 일정기간 내 구체적 투자유치 가능 여부 ② 핀테크대기업 협업모델 등 재무 리스크 보완방안 마련</p>

- ②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른 유연한 부가조건 조정

- 부가조건 중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과 관련성이 낮은 조건\*은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 소비자 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 외 서비스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조정가능한 운영·보고·관리 목적의 조건(영업 및 제휴 규제 등)

\*\* 혁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사무처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핀테크 스타트업이 샌드박스를 발판으로 시장성을 입증·성장하도록 유도

### ③ 핀테크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지원

- **(현황)**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잠재력 대비 규제대응·사업화 역량 부족
    - 다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 규제체계·샌드박스 제도 이해도가 낮아 사업모델 구상,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호소
    -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투자자·수요기관과 네트워킹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서비스 구현 및 운영에 한계
  -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 ① 샌드박스 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교육 제공
      - 핀테크센터를 통해 금융규제 및 인·허가 체계 관련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
    - ② 혁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제도 이해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면 설명회 등을 주기적(예: 분기별)으로 실시
      - 혁신 서비스 지정 기준에 대한 사례형 교육, 제도 타임라인별 사업자의 권리·의무사항 안내 등
    - ③ 혁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업종별·테마별 핀테크 소규모 만남 행사(Meet-up) 및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등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 유도
- \* 투자자, 대기업 등 수요자가 니즈를 제시하는 역제안 방식

#### 테마별 행사 운영계획

- √ **(벤치마킹 사례)** 싱가포르 Deal Friday : 금융사, 핀테크, 투자자들을 관심분야, 테마별로 매칭하여 협업을 논의하도록 하는 행사. 대규모 연간행사(Singapore Fintech Festival)를 보완하는 취지로 소규모로 운영
  - ☞ 금융보안, 블록체인 등 시장 수요가 많은 틈새시장 관련 업종·테마 발굴

⇒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시도의 사업화 전환 촉진

## 2. 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 혁신 서비스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현황) 샌드박스 종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 체계 미흡

○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검토가 지정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집중됨에 따라 적시성 있는 규제개선에 한계

\* 혁신 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규제개선을 요청(혁신법 §10의2①)  
→ 통상 혁신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

○ 현행 규정상 샌드박스 종료 후 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샌드박스 연장가능성 등이 불분명하여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 존재

\* 예: ① 샌드박스 기간 도과 전 정식 규제가 정비된 경우, 기존 샌드박스 지정의 효력  
② 사업자별 규제개선 요청 여부에 따라 유사 서비스 간 연장 여부가 달라지는지

□ (개선) 혁신 서비스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 ① 금융당국 內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주기 단축

- 서비스 개시부터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예: 연단위) 검토하여 우수 사례는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개월
현행	최초 지정기간 운영		연장기간 운영		규제검토 개시·추진
개선	실증결과 점검	규제검토 개시*	연단위 점검	연단위 점검	연단위 점검

\* 규제개선 검토 개시시점을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9개월 → 서비스 개시 이후 최단 1년으로 단축

#### ② 혁신금융서비스 졸업 사업자 대상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 마련

- 샌드박스 기간 도과, 규제개선 요청권 행사 등 사업자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유형별 법적 효력·필요절차 등 안내

⇒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질서있는 제도권 전환 유도

## ② 실증성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

### □ (현황) 혁신 사업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약

- 혁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라도, 규제개선 이후 제도권 사업자 전환 등 지속적 서비스 운영을 확신하기 어려움

√ (사례) 스타트업 A사는 샌드박스 단계에서 선불수단 본인인증 수단으로 여권 등을 활용하였으나 제도화 이후 규제가 강화(충전한도별 안면인식 등 본인인증 확인수단 추가) → A사는 동일 사업모델을 영위하기 위해 샌드박스를 재신청

### □ (개선) 혁신 서비스에 대해 체계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는 샌드박스 종료 후 사업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

- 제도권 전환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별을 위한 성과평가를 내실화\* 및 관련 피드백 제공

\* 현행 '운영 경과보고서(혁신법 §18)'상 평가지표를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①부가조건 준수, ②소비자 보호, ③금융안정 등 제도권 금융과 연계되도록 개선

-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정식 인·허가 심사시 가점 부여, 패스트트랙 (fast-track) 적용 등 우수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지원

- 혁신 서비스의 제도권 전환 관련 규제개선 원칙 수립

- 성공적으로 운영된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영경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를 추가·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 예: 인·허가 외 규제 정비시 현재 운영 중인 모델, 이용한도를 규제의 최저선으로 설정

- 금융 소비자 보호 또는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하고, 예외 허용시 기존 사업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혁신 사업자 성과환류를 통해 우수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성공사례 창출

### ③ 혁신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

#### □ **(현황)** 샌드박스 기간 중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수단 부족

- 서비스 운영 및 종료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 또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응에 한계**
- 혁신 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 지연, 장기 미개시 사례 누적\*

\* (출시지연)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1년내 출시하는 비율은 약 33%**에 불과  
(미개시) 지정일로부터 2년 내 미출시된 서비스 **총 91건**

#### □ **(개선)** 혁신 서비스 운영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① 서비스 운영 단계별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서비스 운영(금융·보안사고 발생 등) 및 종료(고객의 금융·데이터 자산 처리방안 등) 단계별 **대응요령**, 당국 보고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배포

##### ② 서비스 개시 관련 금융당국 보고의무, 지정취소 근거 신설

#### ❖ [참고] 타부처 혁신법령상 지정취소 규정

- (과기부: 정보통신융합법)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가능
-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가능

##### ③ 서비스 종료계획에 대한 **점검체계** 내실화

- 지정기간 만료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방안 등 **종료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금감원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 혁신 서비스 종료 이전 금감원에 제출하는 '최종 운영 경과보고서(혁신법 §18)'에 **자산이관, 소비자 보호방안** 등 종료계획을 포함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조치

⇒ **필요최소한의** 모니터링 도입으로 제도 **실효성** **저해요인** 관리 강화

### 3.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 ① 규제특례 대상 법령 확대

- (현황) 제한적 규제특례 인정범위로 인해 샌드박스 적용분야 한계
  - 금융·기술환경 변화(예: AI, 기술발전 등)에 대응한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의 유연한 지정·운영 곤란\*
  - \* 인터넷은행들은 근거법령 미비로 일반은행과 연계한 혁신금융서비스만 신청하는 등 (망분리 제외) **업권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는 현황
-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특례 법령 확대
  - 금융환경 변화, 시장·정부 內 샌드박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금융업권·서비스를 확대**

#### 규제특례 대상 법령 정비계획(안)

- ① **금융환경 변화:** 「인터넷은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새로운 업권·서비스 또는 금융 인프라 변화와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 발굴
- ② **시장·정부 內 샌드박스 수요:** 업권 및 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수요가 발견되는 경우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

⇒ **금융산업 발전에 맞는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체계 구축

- (현황) 안전의 중요성, 혁신성 반영이 어려운 경직적인 심사구조
  - 연 400건이 넘는 안전에 대해 **2단계 구조**(혁신위 심사-금융위 의결)를 일괄 적용함에 따라 **심사기간 장기화 등 비효율 발생**
  - 혁신성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심층검토하는 **전략적 기능 미흡**

□ (개선) 심사 절차를 안전별로 다원화하고 혁신친화적으로 개편

- ① 동일·유사 서비스, 서비스 연장신청 등 이견이 크지 않은 안전은 혁신위 전결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전 유형별 심사방식 개선(안)>**

안전 유형 (예시)	현행	개선(안)
일반적 신규 혁신 금융 서비스	혁신위 심사 금융위 의결	좌동
동일·유사 서비스, 형식요건 미비		혁신위 심사
서비스 연장 또는 경미한 변경		혁신위 의결
既定 지정 서비스 단순 변경, 철회		금융위원장 전결

- ② 혁신위 內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 사전검토\* 기능 강화

❖ [참고] 타부처 지원기구 운영사례

- ▶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심의위(혁신위에 대응)에 ▲분야별, ▲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 이전에 안전의 내용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토록 함

- \* 예: ①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미비 여부 검토  
 ② 신청된 건 중 혁신성·지정가능성 등 금융당국 차원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공식적 피드백 등 제공 (신청인 동의 등 징구)

⇒ 안전 중요도별 차등적 자원 투입이 가능한 전략적 심사체계 구축

**③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 (현황) 개별 사업자 수요 대응(Bottom-up) 위주의 샌드박스 제도 운영

- 사업애로 해소 차원의 샌드박스 신청이 빈번하고, 포용적 금융, 금융권 AX 등 거시적 금융현안에 부합하는 서비스 출현 제한

## □ (개선)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활용사례 확대

### ❖ [참고] 기획형 샌드박스 제도

- ▶ 정부가 ①과제를 기획하고 ②서비스 실증(사업자 선정), ③규제개선까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샌드박스 모델
  - ☞ 정부 주도하에 신산업 분야, 향후 제도설계 필요분야, 덩어리 규제 등 즉각적 규제개선이 어렵고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기반 구축

-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표준 수립을 위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시장형성이 필요한 분야 중심 과제 발굴

###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과제(안)

#### ① 핀테크 기반 포용적 금융 구현사례 발굴

- ▶ (추진배경) 중저신용자, 금융취약계층 등 대상 제도권 금융 서비스의 공백을 핀테크가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과제를 발굴
- ▶ (과제예시) ① 데이터 기반 대안적 신용평가 및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② AI 활용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③ 공공데이터 활용 채무조정 조기경보, 조기개입 솔루션 도입

#### ② 역량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

- ▶ (추진배경) 미토스 등 프론티어 AI 출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조직·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
- ▶ (과제예시) 고도의 보안역량, AI 활용능력 등을 갖춘 금융사를 엄선하여  
① AI 활용 자체 보안프로그램 마련, AI 기반 패치 자동화  
② 상담형 챗봇, 여신심사, 기업금융 등 대고객 AI 서비스 마련

#### ③ 금융권 AX에 대비한 AI 기반 금융체계 실증

- ▶ (추진배경) 금융 AX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AI 기반 금융체계를 재설계하고자 금융 AI 서비스 실증을 통한 정책 방향성 검토

√ (해외 사례) 영국 AI Live Test(25. 10): 英 FCA는 통제된 실제 시장(Live Market) 내에서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AI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융 AI 서비스를 실증

- ▶ (과제발굴) 금융분야 AI 발전단계(머신러닝, LLM, 생성형 AI 등) 및 해외 AI 금융 서비스 실증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세부 과제 선정

⇒ 정부가 혁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래 금융의 청사진 수립

## V.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내용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되, 법령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 '26년 내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
- 「금융혁신법」등 법령 개정사항은 '26.3분기부터 입법작업 추진

과 제	후속조치	추진일정	추진주체
<b>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b>			
① 배타적 운영권 확대 운영			
① 배타적 운영권 제도 개선	「금융혁신법」 개정	3분기~	금융위
② 서비스 상용화 비용지원 확대	운영방식 변경	즉시 추진	지원센터
② 핀테크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착수	4분기 내	금융위·금감원
③ 핀테크 스타트업 역량 강화 지원			
① 교육 및 설명회 운영	운영방식 변경	즉시 추진	지원센터
② 네트워킹 기회 확대			
<b>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b>			
① 혁신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① 규제개선 필요성 선제적 점검	「혁신위 운영규정」 및 「혁신위 운영 시행세칙」 개정	4분기 내	금융위·금감원
② 제도권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수립	4분기 내	금융위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4분기 내	
② 우수 사업자 우대근거 마련	성과평가 방안 마련	4분기 내	금감원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수립	4분기 내	금융위
③ 혁신 서비스 모니터링 내실화			
① 표준 가이드라인 및 종료계획 검토 절차 신설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혁신위 운영규정」 등 개정	4분기 내	금융위·금감원
② 서비스 개시 통제근거 마련	「금융혁신법」 개정	3분기~	금융위
<b>미래지향적 샌드박스 제도 유연화</b>			
① 규제특례 법령 확대	「금융혁신법」 시행령 개정	3분기~	금융위
② 심사체계 효율화			
① 안건별 심사절차 간소화	「금융혁신법」 개정	3분기~	금융위
② 전문위원회 신설	「금융혁신법」 개정	3분기~	
③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	4분기 내	금융위